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햄버거패티·미트볼·돈가스 등을”을 “것을”로 한다.

제21조제7호가목1) 중 “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”을 “포장육을 해당 점포(자동차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목 5) 중 “식육판매업”을 “식육판매업·식육즉석판매가공업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5항에 제10호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법 제9조의5 및 제9조의6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 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
- 15의2.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가축의 범위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2조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</p> <p>1. 분쇄가공육제품(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(細切)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<u>햄버거패티·미트볼·돈가스</u> 등을 말한다)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21조(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)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가. 식육판매업: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(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营业을 포함한다)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</p>	<p>제2조(가축의 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것을</u> ----- -----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가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·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(판매할 때 보관·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나. ~ 바. (생략)

8. (생략)

제31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~ ④ (생략)

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(도축장·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)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11. ~ 15. (생략)

식육판매업·식육즉석판매가공업

--

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

8.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법 제9조의5 및 제9조의6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
등

11. ~ 15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16. ~ 21. (생 략)

15의2.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
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
관한 사항

16. ~ 21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3259